



04.

학점인정

(일반편입생, 복수전공, 국외대학 교환학생)

Ⅳ-Ⅰ. 학점인정-일반편입생 <학사운영규정 제12조~제14조>

1. 처리기한: 1학기 편입생은 3월 내, 2학기 편입생은 9월 내 처리 권고

(인정받을 예정인 과목은 수강신청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요망)

2. 처리방법:

가. AMS > 성적 > [학부]성적관리 > 편입생인정과목(가)입력 > 해당 학번에 인정과목 입력 후 저장 및 인쇄

나. 학사팀으로 공문 발송 시 **편입생 교과목인정원, 이수지정과목표, 전적대학성적표, 편입생인정과목(가)입력**

출력본 첨부 요망, 학점 인정을 원하지 않는 일반편입생이 있는 경우 성적인정을 받지 않겠다는 본인 서약

서(별도양식 없음)와 이수지정과목표 제출 요망

(편입생 교과목인정원 및 이수지정과목표 양식은 포탈-지식관리-교무지식-교무/학사지식에 있음)

3. 주의사항

▶ 학기당 17(18)학점 이내로 최대 68(72)학점까지 인정, **학사편입생은 전적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불가**

▶ 심화전공이수서약서(별도양식없음)를 제출할 경우 기본전공+심화전공 최소요구학점의 1/2 이내까지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 가능

Ⅳ-Ⅰ. 학점인정-일반편입생 <학사운영규정 제12조~제14조>

3. 주의사항

- ▶ 본교인정과목의 학점은 전적대학과목의 학점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며, 전체학점 뿐만 아니라 개별과목 인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. 단, 전적대학 2학점 과목 두 과목(총 4학점)을 본교의 4학점 이하 한 과목으로 인정하거나, 본교 1학점, 3학점 두 과목(총 4학점)으로 인정하는 방식은 가능함
- ▶ 과목 난이도에 따라 1, 2가 있는 과목은 1부터 본교인정과목으로 선택
- ▶ 본교 타학과 전공과목을 본교인정과목으로 할 경우 이수구분을 일반선택으로 지정

4. 주요 반려 사유

- ▶ 전적대학 과목 중복 인정 신청하거나 본교 인정 과목보다 적은 학점의 전적대학 과목 인정 신청
- ▶ 인정 불가 과목(세종캠퍼스 개설과목, 현장실습·인턴십, 군사학, 캠퍼스 CEO과목 등) 인정 신청
- ▶ 인정 가능 학점(총 68(72)학점 또는 전공 1/2)을 초과하여 인정 신청
- ▶ 이수구분 오류(타학과 전공과목 인정 신청 시 이수구분 '일반선택'으로 하여야 함)
- ▶ 기타: 전적대학 학점 표기 및 교과목명 표기 오류



THE END